●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971

Ⅰ.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안 일 : 2019. 8. 7.

다. 회 부 일 : 2019. 8.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고령사회를 맞아 장년층에게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자·출연의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 김영대)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 설 립 일 : 2016. 4. 28.

○ 설립형태 : 재단법인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 설립목적 :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시설규모

- 50+재단 본부 : 서울복지타운 3층(50+중부캠퍼스 내)

구분	면적	세부내용
계	4,509.9	
지하1층	914.71	공방작업실, 음악실, 마루교실, 커뮤니티실, 노조사무실
지상1층	945.74	카페,공유사무실, 다목적로비, 방재실, 창고
지상2층	748.65	50+상담실, 중부캠퍼스 사무실, 공조실
지상3층	950.40	교육실, 강사실, 컴퓨터실, 재단 본부 사무실, 정보화 용역실
지상4층	950.40	교육실, 대강의실, 강당, 창고, 공조실

- 50+캠퍼스 3개소(서부, 중부, 남부)

명 칭	소재지	건축연면적	층 수	비 고
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84	3,956㎡	지하1~지상4	'16. 5 개관
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21	4,509㎡	지하1~지상4	'17. 3 개관
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5,714,㎡	지하3~지상4	'18. 3 개관

※ 50+캠퍼스 확충(준공 예정) : 북부('20.9), 동남('21.9), 동부('21.12)

○ 관련법령

- 법령 :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사업

○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발굴, 연계

○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3) ’20년 총 소요예산(안) : 17,176,835천원

4) ’20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 업 비 : 8,484,129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비 등) : 8,692,706천원

5) 출연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고령화와 베이비부머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 기존 노년층과 다른 특성과 욕구를 가진 장년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책적 대응 필요에 따라 관련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전담 기관으로,

○ 시, 기관, 민간과 사회적 파트너십으로 상호협력 하여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사업이 아닌,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하여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원하는 등 차별화된 교육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단 및 캠퍼스 운영비 출연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취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의거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이하'재단'이라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무분별한 출자·출연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 절차를 강화함에 있음.
- 같은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1]되어 있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산의 재단 출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는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적 통제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편법적 방법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정비취지에 공감하나, 출연기관의 설립시 타당성검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자치부 협의, 조례안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점과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출연금액을 제외한 출자·출연의 여부만을 승인토록 하는 조치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1)「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일반현황

가. 설립 목적 관련

○ 재단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를 배경으로 장년층에 대한 인생재설계, 사회참여 등 특화된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동 조례 제5조는 재단의 사업범위를 다음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표2-1>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사업 범위

1. 50플러스 캠퍼스 운영
2. 장년층 관련 정책 연구·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
3. 장년층 전직 및 취업지원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지원, 문화·여가 지원 사업, 가족생활 지원 및 상담서비스 등
4. 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장년층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6. 장년층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7. 장년층 사업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발굴, 연계
8. 기타 시장이 장년층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서울시 출연 복지전문기관으로 2016년 설립된 이후 장년층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

나. 조직 및 인력 관련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은 3본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표2-2>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조직도

('19. 7.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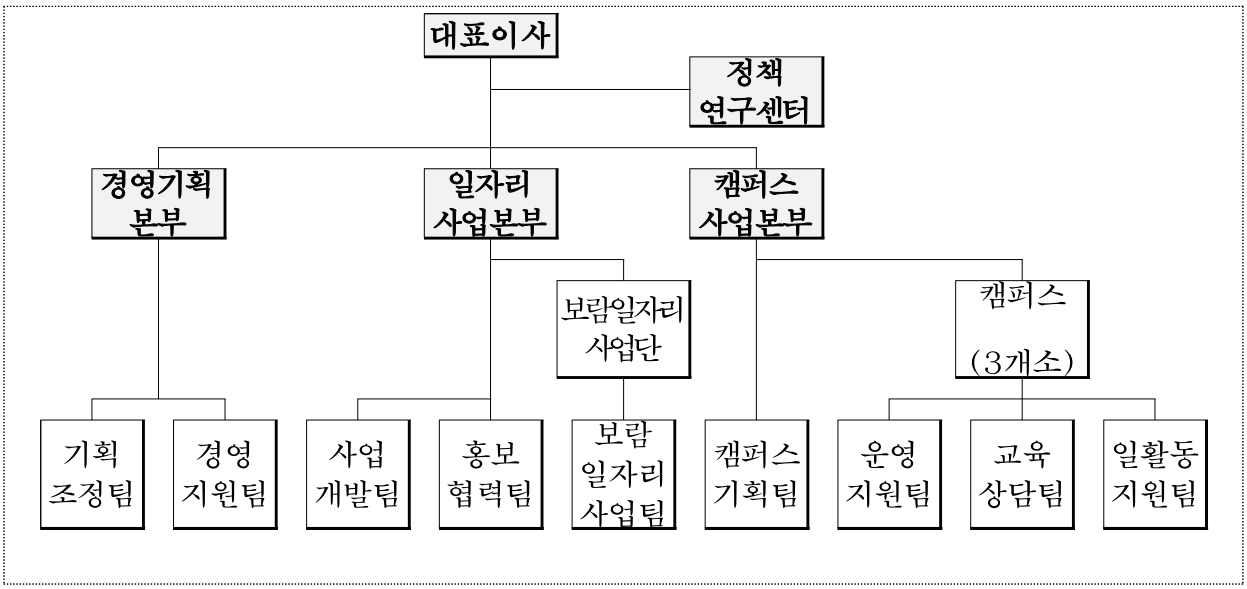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현재 인력 정원은 103명이며, 현원은 90명임.

<표2-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정현원표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계	103/90	1/1	4/4	8/4	12/14	15/11	33/21	30/36
경영기획본부	17/17	1/1	1/1	2/0	1/3	3/3	8/8	1/1
일자리사업본부	19/16		2/2	2/2	2/2	4/3	5/3	4/4
캠퍼스사업본부	60/52		1/1	3/1	9/9	3/1	20/10	24/30
정책연구센터	7/5			1/1		5/4		1/0

○ ’19년 주요 사업(5대 분야, 9대 사업)

5대 분야	9 대 사 업
1 50플러스캠퍼스의 효율적·안정적 서비스 제공	① 50+세대 생애전환 교육 및 상담 제공 ⑨ 50+캠퍼스 기반구축 및 운영관리
2 50플러스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② 50+세대 이슈 발굴 및 정책연구 ③ 50+정책확산 및 네트워크
3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 생태계 강화	④ 정책홍보 및 문화확산을 위한 사업 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50플러스 일자리 모델 개발·확산	⑥ 50+일자리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⑦ 서울형 앙코르커리어 사업
5 지속성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⑧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다. 예산 관련

○ 집행부는 장년층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다음 표와 같이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음.

<표2-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합 계	15,258	14,833	11,969	6,560	
출 연 금	14,160	13,540	10,633	6,437	
사 업 수 입	330	324	198	106	
사 업 외 수 입	14	103	59	17	
잉 여 금	754	866	1,079	-	

<표2-5>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향후 5년간 출연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17,176	23,040	28,670	29,450	30,334	30,939

※ 예산편성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총사업비 대비 출연금 비율을 감안할 때 재단의 서울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바,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출연금 이외 추가 재원 사업 등으로 재정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참고로 50플러스재단은 출연금 이외 추가 재원(사업 수익 등) 확보를 통해 2021년 이후에는 서울시 재정 의존도를 70%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설정하였으나 현 추진 체계로 보았을 때 2021년 재정의존도 70%대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재단의 재정적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의 출연근거[2]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3] 조례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할 수 있겠음.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